

민원 처리

모든 이는 위반 혐의에 대해 법과 보상권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. 주택 민원은 손해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. 조사는 위법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여부를 가리고 차별 행위 및 정책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진행된다. 민원 처리와 관련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웹사이트 방문이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.

워싱턴 주 인권 위원회

올림피아 본부

캐피톨 웨이 사우스 711, 402 호실
사서함 42490
올림피아, 워싱턴 주 98504-2490
360-753-6770

스포케인

록 포인터 플라자 III
노스 워싱턴가 1330, 2460 호실
스포켄, 워싱턴주 99201
509-568-3196

에버렛

100 번가 729 SE
에버렛, 워싱턴주 98208

밴쿠버

사우스 이스트 스톤 밀 드라이브 312, 빌딩 120
밴쿠버, 워싱턴 주 98684

야키마

웨스트 야키마 애비뉴 15, Ste 100
야키마, 워싱턴 주 98902

이스트 웨나치

그랜트 로드 519
이스트 웨나치, 워싱턴 주 98902

웹사이트: www.hum.wa.gov

무료 전화: 1-800-233-3247

TTY: (360) 586-2585

스페인어 가능!

통역이나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면 알려주십시오.

고용 차별



워싱턴 주

인권 위원회

1949 년에 워싱턴 주 의회에 의해 설립된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(WSHRC)는 워싱턴 차별 금지법(WLAD)인 워싱턴 개정법률(RCW) 제 49.60 장의 시행 및 집행을 관할한다.

워싱턴 주 인권위원회(WSHRC)의 임무는 공정한 법 적용,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커뮤니티와의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것이다.

1949 년에 워싱턴 주 의회에 의해 설립된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(WSHRC)는 워싱턴 차별 금지법(WLAD)인 워싱턴 개정법률(RCW) 제 49.60 장의 시행 및 집행을 관할한다.



본 기관은 민원 조사, 재판 외 분쟁해결 및 교육, 훈련과 현지 활동을 통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.

고용 차별이란?

모든 피보호 계층은 고용에서 차별 대우는 위법이다. 고용 차별은 개인의 피보호 계층 위치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발생한다.

고용에서의 피보호 계층:

- 인종/피부색;
- 국적;
- 신념;
- 성/임신;
- 성적 취향/성 정체성
- 재향군인/군인 신분
- 감각,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 - 실재적이거나 혹은 인식되는 경우 ;
- 안내견 사용;
- HIV 또는 C 형 간염;
- 결혼 여부;
- 나이(40+);
- 주정부 직원 내부고발자 신분

차별 민원의 제소 또는 참여한 개인에 대한 보복 역시 위법이다.

불법적인 차별 행위는 취업 지원 중에는 고용 전 부당한 조사를 통해서 또는 고용 기간 동안에는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다. 고용 차별은 다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: 부당 처우, 즉 개인이 다르게 대우를 받거나 피보호 계층 바깥에 있는 작업장의 동료들과 부당하게 구분되는 행위; 부당한 영향, 즉 고용주가 중립적인 정책 또는 대우를 시행하지만, 결과적으로 일반적인

피보호 계층을 기준으로 한 모든 개개인에게 부당한 대우로 나타나는 행위; 학대/비우호적 작업 환경, 즉 피고용인의 위치에 있는 이성적인 사람이 사직 강요가 느껴지는 직원의 피보호 계층 때문에 인내가 힘든 작업 환경; 장애 또는 종교적인 신념의 수용 실패; 또는 차별관련 민원에 대한 보복



고용차별은 주 및 연방법과 소송을 통한 사법 제도에 의해 규제된다, 소송은 법을 해석하여 사실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판례법을 만들어 낸다. 워싱턴 주 고용 차별 금지법은 RCW 49.60; 워싱턴주 행정법(WAC) 제 162 편 및 판례법에 근거한다. 연방 고용 차별 금지법은 다음을 포함한다: 1964 년 시민권법 제 7 편; 미국 장애 복지법; 1967 년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법(ADEA); 1963 년 동일 임금법(EPA);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(GINA); 릴리 레드베터 평등 임금법 및 판례법.

민원 제소

RCW 49.60 에 따라, 고용 차별 민원은 피해일로부터 6 개월내에 WSHRC 에 제소해야 한다. 공소 시효는 주정부 직원의 내부 고발자 지위에 근거하여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피해일로부터 2 년이다.

WSHRC 는 8 인 이하 직원의 고용주, 아메리카 원주민, 연방정부, 종교인 또는 워싱턴 주 외의 클레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.



법의 공정한 적용

워싱턴 주 인권위원회는 중립적인 진상 조사 법 집행 기관이다; 조사 기간 중에는 어떤 누구 편도 옹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, 다만 차별 방지 및 철폐를 위한 법을 지지한다.